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년 7월 8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4년 7월 9일

라. 상정일자 : 2014년 7월 23일

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

나.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체육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위탁 체육시설의 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이용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요율 규정(안 제10조)
-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방안 마련(안 제3조 및 제4조)
 - 체육시설 보험 가입 및 읍·면·동 생활체육시설 시설관리 위임

- 위탁 체육시설의 요금체계 변경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료 결정방식 명시(안 제9조)

라. 참고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국민체육진흥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백 인 업

○ 본 조례안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체육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위탁 체육시설의 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이용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0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요율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탁 체육시설의 요금체계 변경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이용료 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용료 감면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여가선용 및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으로 체육활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 관리 방안 마련과 함께 위탁 체육시설의 요금체계를 변경하여 이용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용료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인 만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용료의 감면·감경은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특히,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오테니스장 단체 월회원 사용료 요금체계 폐지로 일부 월회원들의 요금체계 변경에 따른 불만도 우려되나 수익자 부담원칙과 이용자의 형평성이 제고되어 질 높은 서비스 향상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